

감사위원회 규정



신평제약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사
2. 재무활동의 감사 및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3. 감사보조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관리감독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6. 이사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7.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8.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9.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10. 이사의 보고 수령
11.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2. 이사와 회사간 소송 및 상법 제403조 제1항의 청구에서의 회사 대표
13.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요구
16.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17.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4 조(의무)

- ① 위원회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이사회 보고)


-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 2 장 구 성

제 7 조(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 8 조(해임 및 총원)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
-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7조 2항의  규정의 의한 사외 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유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을 선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생략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 11 조(소집절차)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정기 감사위원회는 5영업일전, 임시 감사위원회는 1영업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부의사항)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소집청구
-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5)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3) 이사와 회사간 소송 및 상법 제403조 제1항의 청구에 관한 회사대표
- (4) 감사계획 및 결과
- (5) 중요한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 (7) 감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승인
- (8) 감사보조조직의 장 임면에 대한 동의
- (9) 외부감사인 선정 등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1)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승인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 (3) 부정방지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 (4)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 (5)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 감독
- (6) 감사업무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마. 기타

- (1) 감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
- (2)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관련 기구

제 16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 10조 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⑤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시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한다.
 1. 재무제표 감사(검토) 결과(미수정 왜곡표시를 포함한 수정사항과

건의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3.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 17 조(감사보조조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설치·운영한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9 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 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주주총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21 조(감사위원회의 세부운영 등)

-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제 22 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①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변경)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승인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 문서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 조사 · 보고

제 24 조(부정행위 등의 조사)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25 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 · 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